

性暴力 犯罪의 實態 및 對策

김 용 화*

第1章 序 論

第1節 論據의 背景과 目的

모든 犯罪은 人間을 나약하게 만들며 人間關係에 있어서 신뢰를 파괴하지만, 특히 性暴力은 개인과 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오는 물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일생을 계속 지속적인 고통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強力犯罪 가운데 가장 무서운 犯罪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性暴力은 이제 더이상 몇몇 운나쁜 女性이 당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 사회 모두는 잘 알고 있다. 性暴力은 그 被害者와 當事者는 물론, 한가정,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社會的 犯罪임에 틀림없다. 즉 性暴力을 당하고도 이에 대한 보호는 커녕 오히려 사회적 非難과 멸

시를 받거나 숨겨야하는 현실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누구를 만나야 할 시간, 가야 할 곳 등에 제약을 받아 적극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性暴力은 女性의 安全한 삶의 조건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不信風潮를 낳아, 社會를 황폐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性暴力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만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性暴力의 불안에서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實態와 問題의 本質을 이해하고 그 解決策을 찾아야만 할 때이다.

第2節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性暴力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총경

범죄의 개념을 정의한 뒤, 性暴力 犯罪의 實狀과 發生의 趨勢를 각종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여 살펴보고, 性暴力 犯罪의 個人的 側面과 社會環境的 側面을 포괄하는 원인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性暴力 犯罪의 수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현행 刑事法의 問題點과 立法論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第2章 性暴力 犯罪의 概念과 實態

第1節 性暴力 犯罪의 概念

“性暴力 犯罪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Leonard Berkowitz에 의하면 공격은 ‘他人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여기에는 物理的, 身體的, 言語的 傷해가 모두 포함되고 暴力은 상처 입히는 정도가 대단히 극심한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傷害를 주려는 시도라고 규정하였고, Liz Kelly는 ‘性暴力 이란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녀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는 그녀의 私的 接觸에 대한 統制能力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性暴力 개념에 대해 法律的, 女性學的, 人類學的 概念으로 구분 설명하고자 한다.

1. 法律學的 概念

형사법적 측면에서 性暴力 犯罪를 廣義로 보면 법적 영역에 있어서 허용된 행위를 逸脫한 일절의 행위가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同性愛, 近親相姦, 鷄姦, 賣淫, 淫亂物 頒布 및 製造, 公演 淫亂, 性器露出 등의 경우에도 모두 性暴力 犯罪의 개념에 포함하게 된다.

이를 형법상의 強姦과醜行의罪에서의 의의로 해석하여 보면 개인의 자유중 性的 自由, 즉 性的意思決定의 자유를 침해하는 犯罪로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성적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성행위에 대한 자유를 積極的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하지 아니한 성행위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 자유, 즉 性行爲로부터의 自由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다.¹⁾

이는 결국 성행위를 하고 싶은 對象과의 성행위가 아니면 違法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I』 법문사, 1997. 3., 253면

2. 女性學的 概念

여성학적 입장에서 性暴力 犯罪은 법률학적 의미인 犯罪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하며 有責한 엄격한 犯罪성립의 概念보다는 反社會的 행위이면 犯罪로 보는 좀더 자유롭고 넓은 의미로 性暴行 또는 性暴力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刑法的 입장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서의 폭행을 最狹義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女性學的 측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든 유형력의 행사로 廣義의 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외의 음란전화, 성적인 학대, 불쾌한 접촉, 가벼운 추행, 아내강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²⁾ 또한 여성학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성에 대한 침해로 보기 보다는 性を 매개로 한 暴力행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加害者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성관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暴力的인 犯罪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被害者에게는 性暴力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조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暴力犯罪의 피해자임을 인식시켜 수치심과 죄책감을 덜어줌으로써, 犯罪의 신고율을 높이고 性暴力 犯罪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人類學的 概念

브라운 밀러는 남녀간의 차별에 의한 強姦의 발생을 古代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밝혔다. 기원전 3000년경의 바빌로니아 문명시대에는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다. 만일 그녀가 強姦을 당하면 그녀는 강간자와 함께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리도록 규정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구출할 의사가 있으면 그녀를 물속에서 건질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姦通에 대한 처벌로써 물에 빠져 죽든지 도망쳐 나와 살던지 개의치 않았다. 고대 유대인들은 결혼한 여성이 強姦 당하면 강간자와 함께 돌로 쳐죽였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적 양상은 전쟁의 상황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렇듯 古代社會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유태 및 기독교, 이슬람, 동양의 유교문화권 등 수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의 존속물로 여긴데서 賣春·外道·性暴力 등의 남녀 불평등의 사회적 관습이 내려왔다.³⁾

여성에 대한 남성의 주인의식 때문에 強姦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건간에 강간을

2) 조도현, “청소년 성범죄 피해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 여중·여고·여대생의 성적피해를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 1993. 2., 66면.

3) 윤가현, “성과 사회”, 『성교육상담교실 자료집』,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1992, 9면.

당한 여성은 자기잘못으로 자기주인인 男便에게 또는 장래의 주인이 될 新郎에게 罪를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 이해된 것이다.⁴⁾

위와 같은 性暴力개념을 종합 정리하여 보면 직접적으로는 強姦은 물론, 성폭행, 성적유혹,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간간, 강도간간등 우리사회에서 성적인 행태를 빌어 발생하고 있는 身體的 暴力과 간접적으로는 음란전화, PC통신이나 삐삐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사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性暴力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 등 言語的, 精神的 暴力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性暴力은 일반인에게 暴力이 아닌 다소 난폭한 성관계 또는 주로 젊은 여성들이나 야한 옷차림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犯罪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실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第2節 性暴力 犯罪의 實態

1. 性暴力 犯罪의 최근事例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性暴力 犯罪의 심각

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人面獸心的인 犯罪양상을 띠고 있다.

그 주요 사례를 보면

- 장로교회 목사와 소년원 지도목사를 겸직하고 있는 피의자 신○○(47세)가 '92. 9월경 경기 부천 소재 예수교회 목사로 재직중 당시 신도이며 여고생인 피해자를 평창동 소재 모 기도원으로 유인후 強姦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99. 9. 8경까지 사진으로 협박하며 수십 차례 걸쳐 強姦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 피의자 권○○(33세)은 '97. 7 ~ '99. 10월경까지 사이에 아내가 가출하여 피해자인 초등학교 6년생(13세)인 딸과 같이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가면 시중을 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 및 강간하였고,
- 2000. 2. 11경 피의자 유○○(29세)가 서울 마포구 홍대 전철역 주변에서 가출소녀 김○○(15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무전기를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부녀보호소에 인계한다고 협박하여 여관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

4) 윤가현, 전계논문, 9-10면.

- 건이 발생하였고,
- 약사인 피의자 권○○(30세)은 2000.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여성 20여명을 상대로 술에 수면제를 섞어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실신케 한 뒤 강간하였으며,
 - 무직인 피의자 김○○(31세, 강간등 전과 8범)은 '99. 10. 26.경 전북○○군 야산에서 초등학생 정○○(11세, 여)를 강간살해한데 이어 같은해 12. 19.경 부근 야산을 배회하다 귀가중이던 피해자 박○○(17세, 여)男妹를 발견하자 남동생을 살해후 누나를 강간살해한 사건 사례 등을 통해 우리는 최근의 性暴力 犯罪의 폐해와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2. 性暴力 犯罪 現況 및 分析

(1) 性暴力 犯罪 發生 · 檢擧現況

최근의 性暴力 犯罪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8년을 기점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최근의 음란·퇴폐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犯罪發生 時間別

性暴力 犯罪의 대부분은 저녁 또는 심야 시간대인 夜間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은 예방활동을 위해 야간시간대의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性暴力 犯罪 發生 · 檢擧現況

구 분 년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1996	7,063	6,858	7,673	4,774	2,899
1997	7,067	6,873	7,712	4,536	3,176
1998	7,846	7,665	8,378	4,869	3,509
1999	8,565	8,424	9,189	4,732	4,457
2000	9,775	9,037	9,253	4,513	4,740

(※ 强姦 및 性暴力 特別法을 포함한 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임)

犯罪發生 時間別

(2000년 발생건수 기준)

구분 시간	계	00:00~ 04:00	04:00~ 07:00	07:00~ 12:00	12:00~ 18:00	18:00~ 20:00	20:00~ 24:00	미 상
계	9,775	2,316	696	1,131	1,457	632	1,470	2,073
(%)	(100)	(23.7)	(7.1)	(11.6)	(15.0)	(6.4)	(15.0)	(21.2)
강 간	6,855	1,759	516	723	865	428	1,066	1,498
성폭력	2,920	557	180	408	592	204	404	575

犯行動機別

(2000년 검거인원 기준)

구분 죄종	계	이 욕	호기심	유 혹	우발적	기 타
계	9,253	682	607	475	3,149	4,340
(%)	(100)	(7.4)	(6.6)	(5.1)	(34.0)	(46.9)
강 간	5,920	375	294	324	2,196	2,731
성폭력	3,333	307	313	151	953	1,609

檢舉端緒別

(2000년 검거건수 기준)

구분 죄종	계	현행범	피해자 신 고	고 소	타인신고	탐문정보	기 타
계	9,037	2,315	2,777	2,944	144	304	553
(%)	(100)	(25.6)	(30.7)	(32.6)	(1.6)	(3.4)	(6.1)
강 간	6,139	1,572	1,806	2,229	95	155	282
성폭력	2,898	743	971	715	49	149	271

(3) 犯行動機別

性暴力 犯罪는 계획적 범행보다는 가해자의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性暴力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노출로 범행이 이어

지고 있으므로, 자기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겠다.

(4) 檢舉端緒別

피해자 신고나 고소를 통하여 검거된 경

犯罪者 前科別

(2000년 검거인원 기준)

구분 죄종	계	전과없음	1범	2~3범	4~5범	6~8범	9범 이상
계 (%)	9,253 (100)	3,227 (34.9)	1,617 (17.5)	1,883 (20.3)	1,022 (11.0)	774 (8.4)	730 (7.9)
강 간	5,920	1,981	1,002	1,216	674	524	523
성폭력	3,333	1,246	615	667	348	250	207

曜日別

(2000년 발생건수 기준)

구분 죄종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상
계 (%)	9,775 (100)	1,077 (11.0)	1,507 (15.4)	1,310 (13.4)	2,188 (22.4)	1,114 (11.4)	1,084 (11.1)	1,080 (11.0)	415 (4.3)
강 간	6,855	786	1,034	934	1,557	788	737	736	283
성폭력	2,920	291	473	376	631	326	347	344	132

우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작용을 하며, 현행범 검거도 25.6%를 차지해 경찰의 즉응 수사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말하여 준다.

(5) 犯罪者 前科別

전과자의 재범율이 65.1%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性暴力 犯罪者에 대한 교정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 있음을 알수 있다.

(6) 曜日別

발생은 평일인 수요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말보다는 평일이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주말보다 평일의 발생건수가 많은 것은 범의자가 평일에 주로 혼자 있게 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 搜查端緒別

최근의 性暴力 犯罪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의 적극 추진결과, 신고에 의한 수사착수가 72.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수치심 및 보복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

搜查端緒別

(2000년 발생건수 기준)

구분 죄종	총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 신 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타인 신고	소계	불심 검문	담문	여죄	기타
계 (%)	9,775	2,317	7,046	3,863	2,869	15	13	53	233	412	9	223	64	116
	(100)	(23.7)	(72.1)	(39.5)	(29.4)	(0.2)	(0.1)	(0.5)	(2.4)	(4.2)	(0.1)	(2.3)	(0.6)	(1.2)
강 간	6,855	1,580	5,062	2,633	2,228	8	7	12	174	213	5	117	15	76
성폭력	2,920	737	1,984	1,230	641	7	6	41	59	199	4	106	49	40

被害者와의 關係

(2000년 검거인원 기준)

구분 죄종	계	타인	지인	이웃	고용자	피고 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친족	기타
계	9,253	5,360	1,219	403	48	87	167	303	210	1,456
(%)	(100)	(57.9)	(13.2)	(4.4)	(0.5)	(0.9)	(1.8)	(3.3)	(2.3)	(15.7)
강 간	5,920	3,310	915	230	33	61	126	218	57	970
성폭력	3,333	2,050	304	173	15	26	41	85	153	486

는 통계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8) 被害者와의 關係

타인에 의한 피해발생이 57.9%에 이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이웃, 직장동료 등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도 전체의 26.4%에 이르는 사실로 보아 성폭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9) 被害者 性別, 年齡別(여성피해자 기준)

‘性暴力’에 관하여 가장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통념중의 하나가 性暴力은 특정한 연령층의 여성, 혹은 성인 여성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인데, 통계를 통하여 볼 경우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직접적인 性暴力이나 性暴力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被害者 性別, 年齡別(여성피해자 기준)

(2000년 발생건수 기준)

구분 죄종	계	12세 이하	13~20	21~30	31~40	41~50	51~60	미상
계	9,775	538	2,013	1,753	994	619	145	3,713
(%)	(100)	(5.5)	(20.6)	(17.9)	(10.2)	(6.3)	(1.5)	(38.0)
강 간	6,855	165	1,368	1,246	750	506	111	2,709
성폭력	2,920	373	645	507	244	113	34	1,004

犯罪發生 場所別

(2000년 발생건수 기준)

구분 죄종	계	아파트, 연립	단독 주택	노상	상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 업소	사무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산야	기타
계	9,775	1,189	1,693	1,486	257	1,227	494	194	469	152	2,614
(%)	(100)	(12.2)	(17.3)	(15.2)	(2.6)	(12.6)	(5.0)	(2.0)	(4.8)	(1.6)	(26.7)
강 간	6,855	779	960	1,209	199	1,031	413	139	225	96	1,804
성폭력	2,920	410	733	277	58	196	81	55	244	56	810

(10) 犯罪發生 場所別

아파트등 주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29.5%를 차지하나 그외 노상,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性暴力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第3節 性暴力 犯罪로 인한 個人的 影響

1. 初期의 影響

(1) 情緒的 反應

공포,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되고, 공격적

성향과 함께 反社會的 行動을 나타나게 된다. 또한 罪責感과 부끄러움으로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열등감으로 자기를 嫌惡하게 되며, 급성불안, 신경증, 신경과민 증상과 함께 경련 및 간질성 증상(epileptic seizure)까지 나타날 수 있다

(2) 身體的 反應

수면 장애(악몽)와 함께 섭식 장애(식욕 감퇴, 병적 식욕과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性暴力으로 인한 성병감염 및 원

치 않는 임신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社會的 機能에의 影響

이유없이 빈번한 싸움을 하거나 가출 등을 하게되며 대인관계에 있어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심각한 경우 자살 시도 및 환각, 돌발적인 분열 행위 및 일상적인 행위로부터의 퇴행과 자아존중감의 하락 현상으로 이어진다.

2. 後期의 影響

(1) 精神, 心理의 症狀

性暴力 被害에 대한 長期的 影響으로는 자아 존중감의 와해, 무력감, 만성 우울증, 신경증, 비통합적 자아 정체감(non-intergrated identity), 정신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살관념화 및 시도와 함께 심각한 경우 殺人 및 對人 暴力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2) 身體的 症狀

장기적 불면증과 함께 임신, 비만등의 신체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性的 逆機能 현상으로 性에 대한 不感症 등을 나타내게 된다.

(3) 社會的 機能의 問題

남편 또는 성적 파트너와의 갈등, 공포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뒤따르며, 일반 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결혼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약물 의존 및 중독,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第 4 節 性暴力 犯罪의 原因

본 연구에서는 性暴力 犯罪의 대표적 유형인 強姦을 중심으로 한 性暴力 犯罪의 원인에 관한 社會文化的 側面과 犯罪心理學的 觀點에서 주장되어온 諸論理들을 나누어 고찰하고, 性暴力 犯罪을 부추기는 우리의 社會環境的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理論的 考察

(1) 社會構造的 側面

1) 女性解放理論

여성해방 운동가들은 社會的·文化的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強姦犯罪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男性은 支配를 연상하고, 女性은 服從을 연상하는 사회적 通念 때문에 強姦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性役割에 대한 차별적 사회화, 노동의 성 분별화, 결혼제도 등 때문에 層化현상 및 여성을 소유 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모순으로 인하여

強姦이 저질러진다는 이론이다.

2) 葛藤理論

이는 資本主義의 사회구조 속에서 強姦의 原因을 찾으려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여성이 마치 私有財産인 양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強姦犯罪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남자의 財産權을 침해한 것이 아니면 刑事 司法的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그러한 사회의 가치구조 속에서 強姦 犯罪가 저질러진다고 설명한다.⁵⁾

3) 男女比率 不均衡 理論

이는 남성의 ‘성배출로(sexual outlets)가 부족하면 強姦犯罪가 성행한다’는 가설을 그 근거로 상정하는 것이다. Svalastoga는 남성의 數가 여성의 數보다 많으면 性 상대를 찾는데 있어서 사회적 긴장이 야기되어 결과적으로 強姦率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⁶⁾

4) 下位文化 理論

이 이론은 특정지역의 強姦率은 그지역의 인구구성, 연령분포, 실업수준, 평균소득, 가족구성, 강력犯罪率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 계층, 실업율이 높은 지

역, 強力犯罪率이 높은 지역에서 性暴力 犯罪率이 높다는 이론이다.

(2) 犯罪心理學的 側面

1) 誘惑說

犯罪자에게서 強姦의 原因을 찾기보다는 피해여성의 옷차림이나 언행(품행)에서 強姦의 原因을 찾으려는 이론이다. 이는 피해자가 먼저 誘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強姦자체를 부정하는 소수설이다.

유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強姦사건에서는 거의 설득력이 없으며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부정되는 이론이기도 하다.

2) 精神疾患說

이 설은 강간범죄를 가해자의 정신장애, 정신분열, 약물, 알코올 의존, 정신지체의 질환에서 原因을 찾으려는 것이나, 일반적인 原因의 설명으로는 미흡하다.

3) 攻擊性的 轉置說

性暴力 범죄자는 어떠한 남성에게 復讐心을 갖고 있으나, 그 대상자인 男性에게 表出시킬 수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나약한 女子에게 轉置(displacement)시켜 풀어 버리는 것이 強姦이라고 설명한다.

5) Inlia R. Schwendinger and Herman Schwendinger, "Rape Myths ; in Leagal, The oretical, and Everyday Pra Ctive", Crime and Social Justice, No. 1, 1981, pp.18-26.

6) Kaare SvalaStoga, "Rape and Social Structur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Vol. 5, No. 1, 1962, pp.48-53.

4) 힘과 憤怒의 表示說

強姦이란 性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性이란 방법을 통하여 힘을 과시하거나 분노를 풀려고 기도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현재의 多數說이기도 하다.⁷⁾

2. 社會環境的 原因

(1) 男性中心의 家父長制

과거 우리 사회는 家門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男性들이 妾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씨받이’라는 풍습까지 생겨 남성들의 외도와 성적자유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반면 여성에게는 貞節을 생명처럼 지키도록 강요하여 여성의 가치를 純潔과 직결시켰다. 즉 여성에게는 결혼전 純潔과 결혼후 貞節을 강요하면서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생활에 관대한 이중적 윤리기준을 적용시켜 성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性暴力 犯罪의 신고를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범인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강도등의 타범행 은폐 목적으로 強姦을 하거나 強姦을 하더라도 검거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쉽게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다.⁸⁾

(2) 享樂, 暴力文化의 氾濫

物質萬能主義와 性差別主義를 바탕으로 性産業이 발달하면서 快樂的 性的 大衆化를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消費商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단계 더 높은 자극을 찾아 暴力을 행사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하는 것이다.

또한 TV드라마, 광고, 쇼 등에서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성의 노출, 암시적 성묘사, 暴力장면 등을 서슴치 않고 방영하고 있어 性的 道具化와 여성의 性商品化, 暴力化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향락적 퇴폐성은 女中生까지 호스티스로 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性倫理 教育體系의 未洽

우리의 性教育은 남성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女性에게는 순결교육을 男性에게는 성병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原論的이고, 나열적인 倫理規範教育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에게는 攻擊性·勇猛性·外向性을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受動性·穩健性·內向性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차별적인 현재의 교육형태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교육을 기대

7) A. N. Groth, A. W. Burgess and L. L. Holmstrom, "Rape ; Power, Anger,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 Chiatry, No. 134, 1977, pp.1239-1243.

8) 서영호, "강간범죄의 실태와 대책", 월간 수사연구, 1995, 9.

할 수 없다. 즉 성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社會通念에의 인식의 태도변화와 진정한 남녀평등의 인격교육이 그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⁹⁾

(4) 傳統的인 家族制度의 崩壞와 産業 社會로의 移轉

근대 산업사회로의 진입은 가족의 형태를 核家族化하게 했으며 씨족 공동체는 거의 해체되었고 匿名性的의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변인 犯罪에 대한 抑制措置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혼자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쉽게 음란 비디오물이나 음란 도서 등에 접근할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충동 억제력이 약한 또래집단끼리 어울리게 되고, 이들중 한명의 충동질만 있어도 쉽게 犯罪로 실행되기가 용이한 것이다.

第3章 性暴力 犯罪에 대한 對策

第1節 性暴力特別法の의 立法論的 考察

1. 親族關係에 의한 強姦罪 等에서의 親族關係의 範圍擴大

性暴力特別法 제7조(親族關係에 의한 強姦等)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強姦을 한 경우 범행당시 적용되었던 법규정이 ‘4촌以內의 血族’으로 되어있어 법원에서 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罪刑法定主義 원칙상 친족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문제는 性暴力特別法 1차개정(1997. 8. 22)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하여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정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의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도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¹⁰⁾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개념에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 있는 만큼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9) 이경자 등,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92 연구보고서 200-7』, 한국여성 개발원.
 10) 또한 검찰이 2년간 동거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 해도 법적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다니”.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나아가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은 그러한 범위는 물론 동거하는 친족까지도 가정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性暴力特別法상의 친족의 범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족에 의한 性暴力犯罪는 인륜과 가정을 파괴하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2. 性暴力 犯罪者 및 幫助한 親權者의 親權剝奪 및 制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加害者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의붓아버지인 경우 被害者의 어머니가 被害者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도 친족관계에 의한 強姦등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의 경우가 많다. 친족 性暴力 犯罪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부나 의붓아버지에 의한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이나 가출 때문에 집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적지가 않다. 그런데 함께 사는 어머니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서도 방관하거

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계속 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피해사실을 말하는 딸에게 도리어 욕을 하며 꾸짖고 정신병원에 보낸 사례도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올바르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

어머니가 그 남편에 의해 자녀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고서도 수사관서에 신고나 기타 피해를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의무위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관은 부작위에 의한 犯罪行爲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법적 제재로서 加害者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방조한 어머니의 친권을 유보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強姦犯罪의 對象範圍 擴大

이와 관련하여 強姦罪의 客體를 ‘婦女’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가 문제시된다. 刑法은 인격적 자유로서의 성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性關係를 강요하는 행위를 犯罪로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強姦罪의 客體를 ‘婦女’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여성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 에는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유기

11)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주확정문제 ‘판례 월보’, 1996, 8., pp.39-49;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 제3권 제1호, pp. 172-202.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強姦罪보다는 다소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이중기준의 性道德이 원칙적으로 男女平等에 반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1(a)에서 규정하는 ‘女性에 대해 差別로 적용되는 형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에서 強姦罪의 객체에 대하여 ‘부녀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을 강제추행죄와 같이 ‘사람을...’이라고 개정하여 성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남녀의 성적 자유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평등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1981년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을 強姦함으로써 起訴되었던 적이 있다. 여성은 오로지 強姦의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아니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파악하면 아주 획기적인 기소로써, 그후 미국,

스웨덴¹²⁾ 독일 등에서는 強姦罪의 대상을 男女 모두로 하는 한편 강제로 인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의 다양한 성교형태 모두를 強姦에 포함하고 있다

4. 夫婦간의 強姦罪 認定

형법상 強姦의 객체가 ‘婦女’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률상의 妻가 強姦罪의 客體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強姦罪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通說의 입장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妻에게 남편의 성교 강요행위는 強姦罪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¹³⁾ 이에 반해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가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때에도 妻에 대한 強姦罪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¹⁴⁾ 실제에서 부부간 強姦罪 성립의 문제는 부부가 원만한 관계에 있을 때는 별문제가 안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있는 경우 또는 별거중에 있는 경우 서로 애정이나 존중성이 없으면서 강제당하는 경우에 문제가

12) 스웨덴에서는 1984년에는 형법에서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동성간의 성교뿐 아니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강간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성도 여성 가해자에 의한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 연구』(안), 한국여성 개발원, p 162.

13) 이재상(1996) 『형법각론』, 박영사, pp.146-147.

14) 유기천(1988) 『형법학(각론강의)상』, 일조각, p.124 ; 이영란(1994), “성폭력특별법의 형법”.

될 것이다. 強姦罪의 본질은 暴力으로 性的自由를 侵害하는 것이며 그 暴力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強制性이 夫婦關係의 특수성이라는 미명하에 용인된다면 처인 여성의 人權侵害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妻가 남편에 대해 성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強姦罪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強姦罪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5. 信賴關係에 있는 者의 性暴力 犯罪에 대한 加重處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친족이나 직장부하 기타 자기의 보호나 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性暴力 犯罪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가로 의사, 성직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強姦 등의 性暴力 行爲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

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性暴力 犯罪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犯罪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害惡性과 非難可能性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형법은 權力關係의 惡用의 章 제212조 제2항에서 병원의 의사 또는 교육시설의 직원 또는 기타 교육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러한 시설에 맡겨진 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흥분 또는 만족케 하기 위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¹⁵⁾

6. 非同意 姦淫罪 및 職場內 性희롱 加害者 處罰規定

현행 형법은 완전히 자유로운 성관계와 항거불능의 性暴力간의 중간지대를 強姦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反社會的 性暴力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非同意姦淫罪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추행한 경

15) 이경자·윤영숙·서명선(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321.

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를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¹⁶⁾

그리고 성희롱은 男女差別과 女性暴力이 복합된 행위로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용관계등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強姦과 醜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형법 제303조, 性暴力特別法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밖에 없다. 따라서 性暴力特別法 제11조에 성희롱도 포함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加害者가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第 2 節 司法機關과 司法節次의 改善

1. 司法機關의 男性偏重 人力構造의 改善

현재 경찰의 92%, 검사의 98.4%, 판사의 93.1%, 변호사의 98%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남성이 절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사법기관이 과연

暴力 희생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性暴力을 포함한 女性暴力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暴力을 당한 여성들이 사법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피해사실을 솔직히 드러내어 적절한 助言과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기관의 人的 構成의 문제를 개선, 女性人力을 일정비율 이상 충원하여 性暴力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와 재판부에 여성을 가능한 많이 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搜查 및 公判過程에서 被害者 保護

(1) 搜查過程에서 被害者 保護

1) 犯罪現場에서의 被害者 保護

犯罪現場 또는 그 직후의 性犯罪 被害者를 발견한 경우 犯罪證據의 철저한 수집과 동시에 被害者 保護에도 만전을 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액, 체모의 채취나 상해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證據蒐集을 위해 피해자의 몸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조사

16)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p37.

하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신체·정신장애자인 경우와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에게 인계시까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피해자의 人的事項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召喚過程에서의 被害者 保護

被害者 召喚時 피해자 召喚前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他人을 통하여 연락을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환이유 등을 함부로 고지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봉합우편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3) 調査過程에서 被害者 保護

調査場所를 선정함에 있어 被害者의 立場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시 참여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자가 보호자 등 信賴關係가 있는 자의 同席을 원하고 情緒的 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 친지 등 보조자의 입회를 허용하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반드시 보

호자의 참여하에 조사토록하는 방안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調査過程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해당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性經驗이나 性犯罪를 당할 당시의 기분, 加害者의 사정 여부 등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公訴維持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가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은 하지 말고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害者가 범행동기를 유발했다는 식의 추궁을 자제하고 모든 조사와 신문은 분리하여 하고 가해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종용함으로써 특정당사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4) 公訴過程에서 被害者 保護

피해자에 대한 證人訊問은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신청토록하고,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加害者에 대한 처벌의사 등 공소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搜查機關은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裁判을 非公開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공판 관여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만 신문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문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용어를 자제하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없이 피해자의 성경험, 과거경력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제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搜查나 裁判過程에서 性暴力 被害者의 과거 성경험, 유흥업소종사 경력, 피해 당시 술, 옷차림, 가해자와의 동행 등의 행실을 크게 문제삼아 피해자를 폭력유발자로서 또는 그 행실에 대해 질책하거나 심지어 수사나 재판의 처리에 중요한 基準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第3節 性暴力에 대한 認識轉換을 위한 教育強化

1. 一般大衆에 대한 教育

국민들의 性暴力特別法の 이해와 활용은

女性暴力의 예방과 사회의 인권문제인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1999년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한 『性暴力·家庭暴力 關聯法 研究』¹⁷⁾에서 性暴力特別法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20~59세의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법의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性暴力特別法の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시행 5년 7개월이 된 현재까지 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性暴力 犯罪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하여 男女平等과 人間相互尊重의 의식이 어릴때부터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여성차별과 女性暴力을 조장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정부의 모니터와 시정촉구, 대중매체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2. 搜查機關, 裁判機關 從事者에 대한 教育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性暴力 피해자들이 第2次的인 人權侵害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담당자를 대상으로 女性人權과 女性暴力問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각각 성범죄 수사지침이 마련되었으나 일선 수사기관들이 숙지하

17) 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 연구』(안)의 제4장, 한국여성개발원, UNDP.

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美國에서는 수사와 재판담당자들에 대해 실시되어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까지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相談所·保護施設 등의 従事者에 대한 教育

性暴力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치료를 하는 상담소·보호소·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필요한 도움을 피해자들에게 주기 위해 法律教育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담원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과 배정시간을 살펴보면 현행 시행규칙에 의해 性暴力 相談所의 상담원 교육이수시간은 총 64시간이며 그중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은 10개의 과목과 함께 전문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전문과목 전체에 40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에 배정되는 교육시간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다.

第4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支援

- 상설상담기구 설치, 암수범죄 척결,
- 외국선진제도 도입, 구제제도 구축 -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이상에서 제안하

는 바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責務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실시, 사법기관의 사건처리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활동지원, 법의 개정추진, 性暴力을 포함한 전반적인 女性暴力撤廢運動의 지원 등에 필요한 制度的 裝置 즉, 교육기관, 경찰, 검찰, 법원, 행정기관, NGO 단체등이 性暴力과 관련된 常設專擔機構를 설치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申告制度를 活性化하여 타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暗數犯罪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외국의 先進化된 성폭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시책 등을 도입하여 이를 體系化·土着化·制度化 하는 한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여성에 대한 生活保護, 保護施設 및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각종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원조달에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第4章 結 論

우리 사회에서의 性暴力 犯罪는 상상을 초월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범죄인의 非道德性이나 무너져 가는 性倫理에 대한 개탄의 정도를 넘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性暴力犯罪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출과 매춘으로 이어져 범죄단체에의 흡수나 犯罪의 실행 등 그 피해가 확산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심각한 社會問題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性暴力 犯罪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性的自由에 대한 일시적인 개인적 침해로 볼 것이 아니며, 性暴力 犯罪의 척결이나 완화를 위해서 그 原因을 자세히 진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實證的인 연구와 理論的인 원인규명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성충동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살펴 이들을 一掃 또는 淨化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性暴力 犯罪의 수사에 있어서는 피

해자들이 겪게 되는 장기에 걸친 身體的·心理的·社會的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중적 성규범이나 성차별 의식 등의 잘못된 사회의 통념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被害者가 수사과정에서 겪게되는 苦衷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蹂躪되거나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배려가 요망된다. 경찰 수사에서의 신속한 犯人檢擧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性暴力 犯罪의 豫防과 緩和 또는 抑制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전 구성원이 性暴力 犯罪의 실상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과 역할에서 자신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社會問題로 생각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국내문헌〉

- 1) 이경자 등,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 2)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법문사, 1997. 3.
-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10.
- 4) 조도현,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지역 여중·여고·여대생의 성적 피해를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 1993. 2.

- 5) 심희기,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 (incestuous rape)’의 범주확정문제” 판례월보 제311호, 1997.
- 6)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상』 일조각, 1988
- 7) 이경자·윤영숙·서명선,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1992
- 8)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1994
- 9)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 피해자학회, 1994
- 10) 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 연구』 (미간행), 한국여성 개발원·UNDP

〈외국문헌〉

- 1) Julia Schwendinger R. and Herman Schwendinger, “Rape Myths ; in Leagal, The oretical, and Everyday Practive”, Crime and Social Justice, No. 1, 1981.
- 2) Kaare SvalaStoga, “Rape and Social Structur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Vol. 5, No. 1, 1962
- 3) Groth A. N., A. W. Burgess and Holmstrom L. L., “Rape ; Power, Anger,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xchiatry, No. 134, 1977.